

-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
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의료환경 개선과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유치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유치추진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, 제28조(조례)
 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필요

○ 그 밖의

가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나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3.11.17. ~ 2023.11.23.)

다.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성별영향평가 : 의견없음(2023.11.14. 가족지원과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과 예산군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고자 유치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.
- 아울러 우리군 소재 국립대학교에 유치되도록, 유치추진 초기 단계부터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범군민적 참여 유도·관련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높여야 할 것임.